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204
----------	------

발의년월일 : 2015. . .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의외

1. 개정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 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제명, 안제1조~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의회”라 한다)”, “(이하 “감사”라 한다)”, “(이하 “조사”라 한다)”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는”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중구”를 “울산광역시 중구”라 하며, “관하여”를 “대하여”로 하며,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하며,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어느 하나와”를 “각 호와”로 한다.

같은 법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영”을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생년월일) :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0000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울산광역시중구의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u>울산광역시중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감사) ①의회는 <u>울산광역시 중구</u>(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u>관하여</u>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u>울산광역시중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p> <p>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u>관하여</u> <u>조사</u>를 행할 수 있다.</p>	<p>울산광역시 중구의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u>울산광역시 중구의회</u>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조 (감사) ①<u>울산광역시 중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는 <u>울산광역시 중구</u> ----- 대하여 -----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울산광역시 중구청장</u> ----- -----.</p> <p>제3조 (조사) ----- -----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 -----.</p>

현 행	개 정 안
-----	-------

서류 미제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생략)
 ② (생략)
 ③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해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별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장 귀하

별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위(생년월일)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04)

1. 심사경과

- 가. 제출 일자 : 2015. 11. 23.(월)
- 나. 제출 자 : 권태호 의원 외 4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5. 11. 2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5. 12. 8.(화)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제명, 안제1조~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